## 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<u>학교법인배재학당(배재대학교)</u>의 <u>2015</u>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<u>배재학당(배재대학교)</u>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 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 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	비그 / 기정 기정 어느 거 0
구분	건수	금액	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-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해 당 없음
계				

붙임: 1. 학교법인 배재학당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
- 2. 배재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- 3.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6년 5월 일

학교법인 배 재 학 당

감사 유 하 정 (인) 기계에

감사 한 백 현 (원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003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## 피감사 기관장

2016년 5

학교법인 배재학이사장 곽명



피감사 기관장

2016년 5월 일

배 재 대 학 교 총 장 김 영 호

